

9. 山林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52號 1990. 7. 14 公布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를 “시장·
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를 “서
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다
만, 제1호·제2호의2·제2호의3·제4호·제13호·
제16호·제26호 및 제27호의 권한은 영림서장
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
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권한

2의2. 법 제31조제3항 및 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의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승인권

제4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항제3호중 “이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
항제4호중 “조림비의 반환조치권(영림서장은
제외한다)”을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권”으로 하고, 동항제6호·제7호·제9호 내
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의 권한중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비림의 소유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
을 권한

제4조제1항제13호중 “동의 및 신고수리권(영
림서장은 제외한다)”을 “동의(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입목·죽의 별채의 승인
및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권”
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대부 또는 사용허
가권”을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으
로 하며, 동항제16호 및 제26호중 “(영림서장
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
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 법 제9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
석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
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제3항제2호중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산림훼손의 신고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을 “시·도지사, 영림서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4.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관한 허가권

제2장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과 감독”을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을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상황 및”을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과”로 하고, 동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1.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보존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4. 산지이용도제고와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림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항

제6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를 “환경처장관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1. 지역안의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의 산지이용도 제고와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의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①

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적성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수종별 식재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2. 풀베기·숙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3.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간벌별 벌채량 기타 벌채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림영림구: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한다.
2. 사유림영림구: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하며 이를 일반영림구·협업영림구·산업비림영림구로 구분한다.

가. 일반영림구: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나. 협업영림구: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다. 산업비림영림구: 산업비림을 소유하

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개발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의 기간”을 “신고된 한 산림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기간”으로, “산림조합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로 한다.

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연도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소유자에게 해당연도 1월말까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때에는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영림계획의 인가)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림소유자가 해당연도의 10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는 해당연도의 다음해 10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인가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중 “사업계획량과 실행량”을 “당초의 사업계획량과 사업연도의 사업계획량”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초의 영림계획상 사업계획이 없는 곳에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5. 당초의 영림계획상 사업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중 “산림조합이”를 “산림조합 또

는 산림조합중앙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조합”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림계획인가의 취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한 조림 및 육림실적이 그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여 영림계획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제14조제1호 가목중 “임산가공”을 “임산가공·조경”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영림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기사 1급이상 또는 영림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의 입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입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5. 전문대학의 입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입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6. 고등학교의 입과를 졸업하고 입업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자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당해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시·군·자치구, 영림서·영림서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을 말하며, 동항에 의한 영림기술자의 업무지도의 범위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지도가 포함된다.

③영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범위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임도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급 임도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입업연수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규임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임업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2급 임도기술자로서 임업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 임도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입업연수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규임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임업토목기술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임업직 9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임업토목기술분야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

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제5호(중전의 동항제4호)중 “산화방지”를 “산불방지”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제18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으로”를 “농림수산부령이”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 법 제1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50헥타아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립가·법인 또는 단체
2. 당해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
3.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4.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연기”를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본다”를 “보며 분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지이용기본도”를 “10년마다 산지이용기본도”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림의 이용원칙)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전임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의 자급기반조성과 자연환경의 보존 및 국민보전휴양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으로 보전한다.
2. 준보전임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산업용지의 개발 및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를 위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한다.

제2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을 “시·도지사 또는 영림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으로, “통지 또는 지시”를 “지시”로,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호 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동의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임지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등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2. 임산물의 생산·가공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4. 농지·초지 또는 특용작물재배지의 조성
5. 야생조수의 사육시설 및 농림어민이 직

접 조성·운영하는 축산시설·누에사육시설의 설치

6. 양어장·양식장·낙시터의 설치
7.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1차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설치
9. 비석·기념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10. 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사무소 또는 창고의 설치
11. 사회복지시설·직업훈련시설·병원·복지회관의 설치와 농어촌휴양지의 조성
12.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1백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의 증설
13. 시멘트블록·시멘트벽돌·시멘트기·레미콘 및 연탄제조를 위한 시설과 시멘트 저장싸이로의 설치
14. 도로변 휴게소·주차장·주유소 및 버스정류장의 설치
15. 종교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16.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17. 위험물의 제조소·취급소 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1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9. 골프장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0. 석재의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 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의 설치
- 23. 기타 보전임지의 지정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대체조림비의 납입) ①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목적으로 보전임지를 이용·개발하기 위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2.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초지를 직접 조성하는 농림어민 또는 공공기관

②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상당하는 산림의 조성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동의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대체조림비는 장기수(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한다)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0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납입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정개발”을 “산림의 개발과 임업진흥”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중 조림(수종갱신 및 천연림보육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조림·육림·벌채 및 임도시설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임간초지조성·임간방목사업
- 2. 산채·약초·화훼·버섯류 및 임간관상수 재배사업
- 3. 양봉·조수류 사육사업
- 4. 청소년 수련사업
- 5. 과수원·팽발조성사업
- 6.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사업
- 7. 휴양시설 조성사업

②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40년의 범위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산림의 소재지·지번 및 지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만한다)
4. 개발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개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제28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촉진지역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중 임지의 생산력이 높고 시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집단화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해제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산림경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산림안에서 생산되는 나무열매·수엽·나무진·나무껍질·수액·나무밀등지·버섯·약초·산채와 기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을 주된 산물로 생산하는 단지(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31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법 제3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산림

제32조(휴양시설의 종류) ①법 제31조제4항

각호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되 그 시설의 규모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이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산책로·야영장·광장·산림욕장·잔디밭·야외탁자·벤취·전망대·산막(간이숙박시설을 포함한다)·진입로·순환로·주차장·안내판·대피소 및 관리소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어린이놀이터·물놀이터 및 체력단련시설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화장실 및 휴지통
4. 교육시설: 자연관찰원·야외교실·전시관·임간수련장 및 교육자료관
5. 기타 산림청장이 기본시설로 정하는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입산물판매장·양어장·낙시터·수렵장·조수사육장·산지과수원 및 매점
2. 교육시설: 산림박물관·식물원 및 동물원
3. 기타 산림청장이 특수시설로 정하는 시설

④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독립가 또는 입업후계자
5.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4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산림비림의 소유 및 개발명령)”을“(산림비림의 소유 및 개발권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소유할 것을 명

할 수 있다”를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00입방미터”를 “5천세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비림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목적에 부합되도록 소유산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산림청장은 법 제43조”를 “산림청장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00입방미터”를 “3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2호중 “5,000입방미터”를 “5천세제곱미터”로, “원목을”을 “목재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호중 “1,000분의 10”을 “1천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목사용자 또는 포플러류제품 생산에 있어서는”을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사용자에 있어서는”으로, “1,000분의 2”를 “1천분의 2”로 한다.

제44조의 제목“(조림비반환)”을“(조림비등의 반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지에 대한 산림훼손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훼손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임도시설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중·묘판매업자의 자격)”을“(중·묘판매업자의 자격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법 제45조”를“법 제45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나목중“농림직공무원으로서 임업분야”를“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하고, 동호다목중“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임학과·임업과 또는 원예과”를“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로 하며, 동호라목중“고등학교임과”를“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내무부령”을“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3. 버섯종균 판매업자의 등록자격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묘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중“산림조합중앙회”를“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

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7조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임산물이 품질표시)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①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이 고시된 임산물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등이 고시된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검사기관·검사대상물의 범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53조제2항”을 각각 “법 제53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임산물가공업의 등록)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범위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사항이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산물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등록범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산물가공업등록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특이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임산물가공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0조의2(임산물가공업의 육성) 산림청장

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산물가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이용증진을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기술보급
2. 원자재의 공급 및 생산품의 수급알선
3. 유통 및 가격정보의 제공
4. 농공단지 입주알선
5. 기타 임산물가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의3(임산물가공업의 감독등) ①법 제

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 시설을 이전·양도 또는 휴업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의 변경을 한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사항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가공업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변경·휴업상황등의 신고

2. 임산물가공업의 생산실적등의 보고

③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임산물가공업의 등록현황 및 생산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을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1월”을 “25일”로 한다.

제55조 본문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매5년마다 이를”을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도지사·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대부 또는 사용허가 대상 국유림)”을 “(국유림의 대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허가”를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분은 국유림안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안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광업·전기설비·방송 및 통신시설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국유림의무상대부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5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3. 산림조합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광업용목적의 경우”를 “광업용 및 국가의 전파용송수신설비를 수용하는 탐의 설치목적의 경우”로 하며, 동항 제2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로 한다.

1. 목축·조림용,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

제63조의 제목 “(대부기간)”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용허가기간”을 “사용허가의 기간”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용 목적의 경우: 10년 이내

제66조의 제목 “(대부료의 반환)”을 “(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으로 하고, 동조중 “내무

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하며, 동조에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림용대부지의 경우에는 대부의 취소당시 대부지안에 잔존하고 있는 차수인 소유의 입목·죽(천연조림 및 인공조림된 어린나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과 차수인이 시설한 임도·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가격은 제68조제2항 및 국유임산물매각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고, 임도·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설비에 소요된 비용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 제목“(국유림의 매각)”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매각”을 “매각 또는 교환”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국유림

제68조의 제목“(국유림매각가격의 결정)”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매각”을 “매각 또는 교환”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임야가격”을 “국유림가격”으로, “내무부령”을 각각 “농림

수산부령”으로, “임야”를 “국유림”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또는 초지조성을 한 자”를 “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로, “매각”을 각각 “매각 또는 교환”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국유림경영관리상”을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으로 한다.

제72조제6항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8조중 “내무부령으로”를 “농림수산부령이”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지역안에서는 토석의 매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영림서장이 국유림안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및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를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주변 3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및 사원경내지
2.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교육기

관·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3. 철도·궤도·도로·운하·하천·호수·소지·제단 또는 가옥으로부터 100미터이내지역. 다만, 국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이내지역, 고속도로 및 철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이내지역
4. 분묘에 있어서는 묘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구역으로부터 2천미터이내의 가시지역과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이내지역
6. 요존국유림, 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
7.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다만,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도면과 지번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9조제3항중 “지역”을 각각 “구역”으로,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및 관리사무실에 한한다)설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호중 “예방·방어·복구”를 “복구”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직접 필요한 경우(폐석에 한한다)”를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3.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수량,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요존국유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한 후 당초의 소유자에게 분수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는 분수림을 설정할 수 없다.

제87조제1항 및 제91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비용의 변상)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변상에 관하여는 제

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의3(채석허가의 제한등) ①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의 채석허가의 제한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제79조제2항제3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제79조제2항제3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미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그 산물이 지역의 자원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결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②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①법 제

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산림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재의 낙반·붕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2. 채석장에서 생산된 폐석등의 처리
3. 주변 산림·주거생활에 대한 피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산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①법 제9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는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0헥타르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제7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9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여야 한다.

1. 석재자원의 분포면적·매장량 및 석질
2. 개발관리에 따르는 난이도
3. 인근주민에 미치는 이해관계
4. 주변산림에 미치는 영향
5. 채석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기타 채석단지의 지정에 대한 의견

④산림청장은 산림보호상 필요하거나 채석단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채석단지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단지의 지정·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채석단지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9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석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2. 채석허가구역이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석업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의 석재를 제외한 토석(이하 “토사”라 한다)채취허가의 제한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제3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산림소유자가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1조의3제2항·제91조의4 및 제91조의6의 규정은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토사채취장의 재해발생방지 및 토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의 제목 “(산화예방등)”을 “(산불예방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00조제1항”을 “법 제100조제2항”으로, “산화”를 “산불”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산화예방”을 각각 “산불예방”으로 한다.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5. 사격장 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제거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예외) 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기금의 용자에 대한 이자율, 용자취급기관등)”을“(기금의 용도·이자율·용자취급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동조제2항)중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용자할 수 있다.

1. 조림 및 육림
2. 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수집·이용·가공 및 보관
4. 임도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
5. 산림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6. 기타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01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를 “영림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장·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예산에 계상된 전입금”을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하고, “수익금과 기타 관리운용에 따르는 수익금으로 한다”를 “수익금으로 한다”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5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명령관(분입기금출납명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8조중 “매월말”을 “매분기말”로 하고, “익월 20일”을 “다음달 10일”로 하며,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자금지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림계획의 작성(대행작성을 포함한다)·변경, 시업(시업명령에 의한 시업을 포함한다) 및 시업의 대집행
2.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육림의 장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및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장비 구입

4.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등 지정산림의 관리
5.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6.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7. 임산물의 생산·수집·이용·가공 및 보관을 통한 소득의 증대
8.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
9. 임산물유통구조의 개선
10.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에 의한 산림경영
11. 임산물의 생산·수집·가공 및 보관과 방부제 사용
12.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13. 병해충등의 구제·예방
14.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15.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6. 기타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9조 및 제1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매매증명의 발급대상임야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법 제56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임야를 말한다.

②법 제1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매수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공공사업시행사
5.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임야의 취득자
6.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임야의 취득자
7.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임야를 취득하는 금융기관·보험기관·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임야를 매수한 자가 당해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 또는 매수자의 경우에는 당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실수요자의 판정기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임야이용계획서가 매수목적과 부합하고 당해임야의 임상 및 지형여건으로 보아 계획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매수하고자 하는 임야면적이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소유 또는 개발의 기준면적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산림경영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임야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금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제110조의2(매수임야의 사후관리) ①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되어 그에 합당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승인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법 제112조제3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10조의3(임야의 선매) ①시장·군수는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임야에 대하여 타에 우선하여 매수할 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영림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고의 취지
2. 임야의 소재지·지번·지적 및 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②법 제11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기간은 당해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월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선매희망자가 없거나 선매협의의 지연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25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3조중 “내무부령”을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림계획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도중에 작성하는 영림계획은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영림계획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영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업연수원·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임업기계훈련원 소속 임도교관으로 종사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임업연수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규임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임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제7조(버섯종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으로 국유

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제63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국유림에 대한 1990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국유림의 대부료등에 관한 경과조

◁山林法施行令 改正理由▷

山林法の改正(1990.1.13, 法律第4206號)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營林計劃의 節次와 林野를 賣買하는 경우 買收者가 발급받아야 하는 林野賣買證明을 발급대상임야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現行規定상의 일부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現在 5年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營林計劃을 10年마다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山林所有者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8條)
- 나. 全國의 山林은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로 구분되어 있는 바, 그의 이용원칙을 각각 정함으로써 山林의 綜合的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開發을 促進하도록 함(令 第22條의2)
- 다. 保全林地를 다른 用途로 轉用하고자 하는 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代替造林費의 納入基準과 節次등을 정함(令 第24條의2)
- 라. 國民의 保健休養·情緒涵養 및 自然學習教育등을 위하여 造成하는 自然休養林안에 設置하는 休養施設을 基本施設과 特殊施設로 구분하고 그 종류를 정함(令 第32條)·
- 마. 母法の 改正으로 林產物加工業登錄制가 실시됨에 따라 林產物加工業의 登錄節次· 육성 및 監督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50條 내지 第50條의3)
- 바. 市長·郡守로부터 林野賣買證明을 발급받아야 하는 對象林野는 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을 제외한 林野로서 買收하고자 하는 면적이 2千제곱미터이상인 林野로 함(令 第109條第1項)
(법제처 제공)

